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76호 2017. 1. 25.(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355호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거창군 조례 제235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9
거창군 조례 제2357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14
거창군 조례 제2358호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21
거창군 조례 제2359호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1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1
거창군 규칙 제1217호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53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04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55
---	----

거창군 훈령 제405호 거창군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57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7호 거창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64

거창군 고시 제2017-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69

거창군 고시 제2017-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협조 70

거창군 고시 제2017-10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7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91호 거창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73

거창군 공고 제2017-97호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비 지원 공고 75

거창군 공고 제2017-102호 2018년 시행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공고 81

거창군 공고 제2017-107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4

거창군 공고 제2017-108호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
법예고 104

거창군 공고 제2017-110호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111

거창군 공고 제2017-116호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6

거창군 공고 제2017-118호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40

회 람									
--------	--	--	--	--	--	--	--	--	--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도로명주소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355호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군수는 법”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항 중 “훼손·망실된”을 “훼손되거나 없어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7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5. 훼손되거나 없어진 도로명주소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제17조제2항 중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를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와 훼손될 거 같거나 없어질 것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u><삭 제></u></p>
<p><u>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 방법(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u>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u>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u></p> <p>② ~ ③ (생략)</p>	<p><u>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u>----- ----- ----- ----- ----- ----- ----- ----- ----- ----- <u>「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u>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u>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 조사한 결과, <u>훼손·망실된</u>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u></p> <p>②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u>훼손·망실된</u>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p>	<p><u>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u> ----- ----- ----- ----- ----- ----- <u>훼손되거나 없어진</u>----- ----- ----- ② ----- ----- ----- <u>훼손되거나 없어진</u> ----- -----</p>

현행	개정안
<p>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u>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u>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u>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1. ~ 4. (생략) 5. <u>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u> 6. ~ 7. (생략)</p>	<p>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u>① 영 제17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u> 1. ----- 2. ----- ----- ----- <u>②-----</u> ----- ----- 1. ~ 4. (현행과 같음) 5. <u>훼손되거나 없어진 도로명주소시설에 대한-----</u> 6. ~ 7. (현행과 같음)</p>
<p>제1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생략)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u>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1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u>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와 훼손될 거 같거나 없어질 것이-----</u> -----</p>
<p>제24조(구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② ~ ③ (생략)</p>	<p>제24조(구성) ① ----- ----- ----- ----- -----<u>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 ③(현행과 같음)</p>
<p>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② (생략)</p>	<p>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u><단서 삭제></u> ② (현행과 같음)</p>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 ~ 2
----------	----------

제출연월일	2017. 1. 0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앴(안 제16조)

(법령 개정 전) 조례로 정하는 자

(법령 개정 후)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자

⇒ 현행 문구로는 조례로 명시된 자만이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조례로 정하는 자”로 명확히 표현

※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 정비

나. 「양성평등기본법」 의무사항 반영(안 제24조)

○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순화(안 제8조, 제15조 ~ 제17조)

○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훼손·망실된 ⇒ 훼손되거나 없어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2. 7. ~ 12.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없음

(6) 경남도내 다른 시·군 조례 개정 현황

○ 개정완료: 해당없음(부산광역시 수영구 개정완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35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670명”을 “67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56명”을 “66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u></p>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670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u>656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p>	<p><u>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u></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u>676명</u>-----</p> <p>-----</p> <p>1. -----<u>662명</u></p> <p>2. -----</p>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76 670	284 281	14	135 133	71 70	64 63	54 53	40	149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44 638	280 277	14	108 106	44 43	64 63	53 52	40	149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605 599	266 263	11	102 100	40 39	62 61	49 48	39	138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 관련조문: 제2조(정원의 총수)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출	국비							
	군비		165	170	175	180	185	875
	소계(a)		165	170	175	180	185	875
세입	0							
	지방세							
	소계(b)							
총 비용(a-b)			165	170	175	180	185	875

3. 관련 의견

- 국책사업 및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준공에 따른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증가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증원 내역: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
- 연간 인건비 증가액: 165,000천원
 - 기본급 132,000천원, 수당 등 33,000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이화기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 ~ 3
----------	----------

제출연월일	2017. 1. 0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국정시책 및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준공 등 대형시설 운영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별표 3)

- 670명 → 676명(증 6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 6명
 - 현행: 599명(본청263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0명, 사업소48명, 읍39명, 면138명)
 - 조정: 605명(본청266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2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38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연 165,000천원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12. 07. ~ 12.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7년 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357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호 중 “제17조”를 “영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를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제1항 단서”를 “영 제18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4조제5항”을 “영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7조”를 “영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별표 1”을 “영 별표 1”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를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u></p> <p>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u>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u></p> <p>2. <u>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u></p> <p>3. <u>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u></p> <p>4. <u>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5. <u>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u></p> <p>6. <u>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u></p>	<p><u>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u></p> <p>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 ----- ----- -----</p> <p>1. <u>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u></p> <p>2. <u>영 제17조</u>----- -----</p> <p>3. <u>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u> -----</p> <p>4. <u>영 제18조제1항 단서</u>----- ----- -----</p> <p><u>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u></p> <p>5. <u>영 제24조제5항</u>----- ----- -----</p> <p>6. <u>영 제27조</u>-----</p>

현행	개정안
<p>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 -----"인사혁신처장"----- ----- -----"인사혁신처장"----- ----- ----- -----</p>
<p>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p>	<p>8. 영 별표 1----- ----- ----- ----- ----- -----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p>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단위: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 ~ 4
----------	----------

제출연월일	2017. 1. 0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15.1.6.)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자치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안 별표)

- 관외출장시 숙박비의 지역별 상한 기준액 정함
운임과 숙박비 정액지급 ⇒ 실비지급
- 숙박비 지급 기준을 국가직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구분	현 행					개 정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박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나.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안 제5조제4호의2)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처예규)」에 따른 실비 지급규정 반영
- 다. 정부조직개편 사항 반영함(안 제5조)
- 행정안전부장관 ⇒ 인사혁신처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 제16조, 제18조, 별표 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2. 9. ~ 12. 2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사항

○ 개정 중(입법예고):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의령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358호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건축조례”를 “거창군 건축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영 제5조의5제1항”으로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생략할 수 있다”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5조”를 “영 제5조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제7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있다.”를 “있다. 다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회 운영기준) 그 밖에 위원회 심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7조 중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을”을 “제46조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5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예치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를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개월”을 “1년”

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및 인명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제24조 중 “영 제11조제2항제3호”를 “영 제11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제20조 및 제2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8조 중 “제13호”를 “제15호”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준”이라 한다)별표 5의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_1 - \frac{(X - x_2)(y_1 - y_2)}{x_1 - x_2}$$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지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검사하여야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6조제2항단서”를 “영 제86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로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영 제86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6조제2항제2호”를 “영 제86조제3항제2호”로 하다.

제7장의2(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2 건축협정

제41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공용주차장 및 도로설치 등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구역

②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저당권자
2. 압류권자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
3. 건축협정 이행계획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제1항 중 “법 제80조제1항단서”를 “법 제8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0조제4항단서”를 “법 제80조제5항 단서”로 한다.

제42조의2,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제4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로 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유사한 것”을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사한 것”을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건축조례</u></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군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u></p> <p>제4조(구성 및 임기) ① <u>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③ <u>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u></p> <p>④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거쳐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u></p> <p>⑤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6조(기능) ① <u>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의5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며, 영 제5조의5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u></p> <p><u>1.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하는 건축물</u> <u>가. 단독주택으로 2층 이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u></p>	<p><u>거창군 건축 조례</u></p> <p>제2조(적용범위)---<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u>-----</p> <p>제4조(구성 및 임기) ① <u>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u></p> <p>②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③ <u>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u></p> <p>④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제6조(기능) ① ----- -----<u>영 제5조의5 제1항</u>----- -----<u>영 제5조의5 제1항제6호</u>----- ----- ----- <u><삭 제></u></p>

만의 건축물

나. 기존건축물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개축 건축물. 다만, 공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내 건축물은 기존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

2.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4. (생략)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 관

2. (현행과 같음)

② -----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

- 1.-----
- 2.-----

3. -----

-----영 제5조5-----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제7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예치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 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은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 제1항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 시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

1. -----

2. -----

3. -----

③ -----
-----1년-----

④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및 인명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가설건축물)

- ① (생략)
-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그 밖
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 6. (생략)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
제2항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략)
- 4. 법 제27조와 영 제20조 및 제23조
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
인업무 대행 건축물

제28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
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
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과 제26조제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
한다.

<신 설>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

제26조(가설건축물)

-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1. ~ 6. (현행과 같음)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 1. ~ 3. (현행과 같음)
- 4.-----제20조

제28조(설계도서의 작성) -----

-----제15호-----

제28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준”이라 한다)별표 5의 건축공사감

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_1 - \frac{(X - x_2)(y_1 - y_2)}{x_1 - x_2}$$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지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 설>

제35조의3(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검사하여야 한다.

제4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대지들 이상의 도로·공원·광장·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의 부분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가 접하는 도로 중 가장 넓은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1.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대지 밖에 있는 대지 부분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용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③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

<삭 제>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단서 삭제>

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영 제86조제2항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영 제86조제3항제1호-----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1. ~ 2. (현행과 같음)

제7장의2 건축협정

제41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공용주차장 및 도로설치 등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구역

②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저당권자

2. 압류권자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

3. 건축협정 이행계획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생략)

③ 법 제80조제4항단서에 따라 제1항의 경우 총 부과 횟수는 5회 이내로 한다.

<신 설>

<신 설>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0조제5항단서-----

제4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 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법 제20조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생략)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 4. (생략)

② (생략)

제3항을 위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로 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1. -----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2. -----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4미터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2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미터 이상
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비고: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 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띄어야 하는 거리는”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 ~ 5
----------	----------

제출연월일	2017. 1. 0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축위원회 구성 개정(안 제4조)
- 나. 건축위원회 기능 개정(안 제6조)
- 다. 건축위원회 회의 개정(안 제7조)
- 라. 건축위원회 자료제출의 요구 신설(안 제7조의2)
- 마.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신설(안 제13조의2)
- 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기준 개정(안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
- 사.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28조의2)
- 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완화 기준 신설(안 제35조2)
- 자. 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신설(안 제35조의3)
- 차. 건축물의 높이제한 삭제(안 제40조)
- 카. 건축협정의 체결 신설(안 제41조의2)
- 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신설(안 제42조의2)
- 파.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신설(안 제42조의3)
- 하. 용벽 및 공작물 축조신고 기준 구체화(안 제43조제1항)
- 거. 부속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 구체화(안 별표 3 비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1. 25. ~ 12. 15.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안 제8조)

(6) 도내 개정현황

○ 개정완료: 없음

○ 개정 중: 13개 시·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7년 1월 25일

거창군 조례 제2359호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군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노화”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노화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재생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향노화산업”이란 향노화를 위해 사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향노화를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 서비스를 연구·개발·제조·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향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
3. 향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4. 향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한방약초 생산과 가공제품 생산지원, 판로개척
6. 향노화 힐링특구 지원
7. 그 밖에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향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향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2. 향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3. 향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향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4. 향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한방약초 가공품의 생산,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6. 한방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
7. 그 밖에 군수가 향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향노화산업지원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향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
2. 향노화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활동
3. 지원계획 수립·변경

4. 향노화산업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향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향노화산업 담당과장, 향노화산업 관련 담당공무원
2. 향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향노화 관련 학과 대학교수 및 강사
4. 향노화 관련 기업체 대표 및 단체·법인 대표
5. 향노화 관련 경작 농업인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향노화산업 담당주사로 한다.

⑦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향노화사업 지원, 거창군 향노화지원위원회 운영 수당

○ 관련조문: 제6조, 제1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a - b)		408	165	135	20	20	748
세출	군 비	408	165	135	20	20	748
	소계(a)	408	165	135	20	20	748
세입	0						
	소계(b)						

3. 관련 의견

- 향노화산업을 위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이 매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인력육성 육성, 향노화제품 연구개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임.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합 계	408	165	135	20	20	748
약초마을 조성 약초종묘 구입 (가북면)	32	0	0	0	0	32
한방 웰니스 관광사업 자본금(경남도 추진)	100	0	0	0	0	100
감악산 향노화 웰니스 체험 관광지 조성(경관약초, 화초 등)	101	20	20	20	20	181
감악산 향노화 웰니스 체험 관광지 조성(산채약초 공동 시범단지 조성)	65	65	35	0	0	165
향노화제품 개발	50	50	50	0	0	150
향노화 프로그램 개발	60	30	30	0	0	120

2. 사업효과

- 이 사업 추진에 따른 직접적인 관광객 입장료 수입 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창군 방문 관광객 유치에 따른 부가적인 소득창출 가능
- 산채약초 공동시범단지 조성으로 약초재배 단체 소득 창출 기반조성
- 향노화 제품개발로 관내 약초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향노화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다양한 힐링 체험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제고

작성자: 향노화산업과장 이 규 석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7 ~ 6
----------	----------

제출연월일	2017. 1. 0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산업변화에 부응하여 향노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향노화, 향노화산업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군수는 거창군이 향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향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
- 향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 향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 한방약초 생산과 가공제품 생산지원, 판로개척
- 향노화 힐링특구 지원
- 그 밖에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함(안 제6조)

- 향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 향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 향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향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 향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 한방약초 가공품의 생산,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 한방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
- 그 밖에 군수가 향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12조)

- 기능: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항노화 정책간담회 활동 등, 지원계획 수립·변경, 항노화산업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 구성 등: 20명 이내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2년 임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예산 408,000천원 예산 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1. 29. ~ 12.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없음

(6) 전국 조례 현황: 제정 4건(부산, 제주도, 함양, 산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1월 25일

거창군 규칙 제121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6 ~ 78
----------	-----------

제출연월일	2016. 12. 28.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국정시책 및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준공 등 대형시설 운영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총 정원 증 6명)

가. 일반직 7급 정원 증원 2명(안 별표)

- 본청 7급(증2): 88명 → 90명(행·공 1, 복지 1)

나. 일반직 7급 정원 감원 1명(안 별표)

- 본청 7급(감1): 90명 → 89명(보·간 -1)

다. 일반직 8급 정원 증원 2명(안 별표)

- 본청 8급(증1): 60명 → 61명(복지 1)
- 직속기관 8급(증1): 33명 → 34명(보·의·간 1)

라. 일반직 9급 정원 증원 3명(안 별표)

- 본청 9급(증1): 30명 → 31명(복지 1)
- 직속기관 9급(증1): 8명 → 9명(행·농·녹·시 1)
- 사 업 소 9급(증1): 6명 → 7명(행·공·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12. 07. ~ 12.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1월 25일

거창군 규칙 제1217호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6 ~ 81
----------	-----------

제출연월일	2016. 12. 28.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부서명 변경 및 사무이관 등에 따른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 | | |
|----------------------|-------------------|
| ○ 주민생활지원실 ⇒ 복지정책과 | ○ 승강기경제과 ⇒ 경제교통과 |
|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실 | ○ 산림녹지과 ⇒ 산림과 |
| ○ 녹색환경과 ⇒ 환경과 | ○ 농축산과 ⇒ 농업축산과 |
| ○ 농업소득과 ⇒ 향노화산업과 | ○ 마을만들기과 ⇒ 농촌진흥과 |
| ○ 문화센터 ⇒ 평생교육센터 | ○ 상하수도사업소 ⇒ 수도사업소 |
| ○ 체육청소년사업소 ⇒ 체육시설사업소 | |

나. 단위업무 신설, 수정, 삭제 반영(안 별표)

- 지역균형발전 사업발굴 및 공공기관 유치 전략방안 마련 신설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이관으로 단위업무 수정
- 문화센터 문화재단 이관으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에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생략함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1월 25일

거창군 훈령 제404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16 ~ 79
----------	-----------

제출연월일	2016. 12. 28.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국정시책 및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준공 등 대형시설 운영에 따라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조례 배정기준 등에 맞게 일반직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총 정원 증 6명(안 별표)

- 기획감사실(증1): 행정·공업 7급 증1
- 재무과(감1): 사무운영·전기운영·위생·방호 6급 감1
- 복지정책과(증3): 복지 7급 증1, 복지 8급 증1, 복지 9급 증1,
복지정책과(감1): 보건·간호 7급 감1
- 산림과(증1): 사무운영·전기운영·위생·방호 6급 증1
- 농업기술센터(증1): 행정·농업·녹지·시설 9급 증1
- 보건소(증1): 보·의·간 8급 증1
- 평생교육센터(증2): 행정·방송통신 6급 증1, 행정·사서 6급 증1
평생교육센터(감2): 행정 6급 감1, 사서 6급 감1
- 체육시설사업소(증1): 행정·공업·시설 9급 증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규제심사: 해당없음
- 입법예고: 해당없음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1월 25일

거창군 훈령 제405호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문화재, 문화센터”를 “문화재”로 한다.

별표 중 행정과, 기업지원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산림과, 체육시설 사업소의 분장사무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본청 실·과에 두는 담당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시설, <u>문화재</u>, <u>문화센터</u>, 박물관, 수승대담당을 둔다.</p> <p>② ~ ④ (생략)</p>	<p>제3조(구성) ①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u>문화재</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별표] (제8조 관련)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행정과	정보화	103. 소프트웨어 중복 개발 심의 조정 104. 정보화마을 구축 및 활성화 105. 군민 정보화 교육 및 정보이용시설 관리 106. 정보통신 보안업무 및 보안시스템 운영 관리 107.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관리 업무 108. 국가정보 통신망(네트워크) 운영 109. 행정전화망(인터넷전화교환기) 운영 110. 공공건물 통신공사 감독업무 111.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 112. 청사내 행정방송 및 TV유선시설 유지관리 업무 1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114.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115. 행정정보 공동 이용 권한 관리 116. 거창군 블로그기자단 등 SNS 운영관리 (→ 문화관광과로 이관)
기업지원과	전략사업	1. 군정 역점사업 추진 2. 지역균형발전 사업 발굴 3. 공공기관 유치 전략방안 마련 4. 현안사업 추진 5. 과내 일반사무 및 예산회계 업무
복지정책과	희망복지	52. 민관협력사업 53. 취약계층 이웃돕기, 공동모금회 등 연계지원 54. 긴급복지 지원사업 55. 기부식품 제공사업 56. 거창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57. 자원봉사단체 관리 및 육성 58. 자원봉사관련 업무 전반 59. 보건복지 콜센터 운영 60. 복지대상자 모니터 및 사례관리 관련 읍면 지도 감독 61.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62.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63. 방문형 서비스 사후관리 총괄 64. 복지자원 개발 및 배분, 관리 6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67. 여성정책 및 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복지정책과	희망복지	68.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69.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상담소 운영 70. 여성 권익신장 및 역량강화 71. 드림스타트 사업 (추가)
	여성아동	72.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및 센터 운영 73.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74. 보육시설 종사자 및 지도 점검 75. 정부지원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76. 아동급식지원대상자 조사 및 지원 77.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및 운영 78.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관리 79.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80. 저출산 대책 80. 드림스타트 사업 (→ 희망복지담당 이관) 81. 재활용품매장 및 여성의 방 운영 지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1.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예술활동 지원 2. 향교 및 종교단체의 지원 관리 3. 공연장 및 공연관리 4. 군지, 향지 편찬에 관한 업무 5. 전시 문화체육시설 실시계획 수립·시행 6. 아람예술제 지원 육성 7. 국제연극제 지원 육성 8. 거창 3.1 민속문화제 지원 육성 9. 비디오감상실·게임장제공업·노래연습장업 등록 신고 및 관리 10. 음반,비디오물 등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1. 문화예술 공모사업 12. 민속예술축제 13. 영화관 상영 관리 14. 창작스튜디오 육성 15. 문화재단 설립 운영 업무 16. 문학관 건립 17. 국악아카데미강좌 운영 (추가) 18. 화요예술무대 운영 (추가) 19. 거창문화원 육성 및 거창문화원사 관리 (추가) 20. 공연·전시 시설물(무대기계, 음향, 조명) 및 관련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추가) 21. 과내 일반서무 및 예산회계 업무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문화관광과	관광진흥	<p>22. 관광기본계획 수립</p> <p>23.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부</p> <p>24.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p> <p>25. 거창한마당축제 업무</p> <p>26. 관광안내정보(체계) 개선사업</p> <p>27. 관광홍보 안내(광고)판 설치 및 관리</p> <p>28. 문화관광해설사 관리</p> <p>29. 각종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p> <p>30. 관광 버스투어, 팸투어 개최</p> <p>31. 관광사진공모전 관련 업무</p> <p>32. 관광기념품에 관한 사항</p> <p>33. 각종행사, 관광객유치관련 이벤트 사업추진</p> <p>34. 관광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야영장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편의시설업 등)</p> <p>35. 관광지 방문객 통계 업무</p> <p>36.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p> <p>37. 가야문화권협의회 업무 <u>가야문화권협의회,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업무 (변경)</u></p> <p>38. 향노화 관광에 관한 사항</p> <p>39. <u>관광홍보기자단 운영 (추가)</u></p> <p>40.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p>
	문화센터 전체삭제	<p>58. 문화센터 운영의 종합기획조정</p> <p>59. 문화센터의 시설관리 운영</p> <p>60. 문화센터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p> <p>61. 문화센터 시설사용(대관)에 관한사항</p> <p>62. 문화센터 공연·전시의 홍보에 관한사항</p> <p>63. 문화센터 예술가족 및 예매처 운영에 관한사항</p> <p>64. 국악아카데미강좌 운영</p> <p>65. 화요예술무대 운영</p> <p>66. 거창문화원 육성 및 거창문화원사 관리</p> <p>67. 공연·전시 시설물(무대기계, 음향, 조명) 및 관련 — 설비운영 및 유지보수</p>
산림과	산림휴양	<p>54. 화강석특화사업 총괄관리 및 평가업무</p> <p>55. 화강석사업 홍보</p> <p>56. 화강석 지역협력단 운영</p> <p>57. 지역특화발전 특구 업무</p>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산림과	산림휴양	58.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59.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 60. 거창화강석 상징조형물 관리 61.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62. 산림레포츠파크 조성 및 운영 63.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 (추가) 64. 산촌종합개발사업 65. 자연휴양림·산림욕장·수목원·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 66. 산림분야 항노화에 관한 업무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11. 스포츠파크 총괄 관리운영 12.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3. 체육시설 대관 및 사용료 부과·징수 14. 위탁 체육시설 관리 15. 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운영 16. 실버레포츠타운 유지관리 17. 군민생활체육공원, 읍민생활공원 관리 18.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관리 감독 18. 국민체육센터 운영·시설물 관리(건축, 전기, 기계) 19. 그 밖에 스포츠파크 내 각종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17 ~ 80
----------	-----------

제출연월일	2016. 12. 28.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문화재단 신설, 감염병예방 강화 및 국민체육센터 직영에 따른 세부분장 사무를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2. 주요내용

가. 문화센터담당 삭제(안 제3조제1항제9호, 별표)

- 문화재단 업무로 이관

나. 세부분장사무 이관 및 삭제, 신설(안 별표)

- 이관사항(행정과⇒문화관광과)
 - 거창군 블로그기자단 등 SNS 운영관리
- 삭제사항
 - 문화센터 운영의 종합기획조정 등
 -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관리감독
- 신설사항
 - 지역균형발전 사업 발굴
 - 공공기관 유치 전략방안 마련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
 - 국민체육센터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에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없음
- (3) 입법예고: 해당없음

거창군 고시 제2017-7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4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1-81호(2011.11.04)로 최초 실시계획인가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40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 19

거 창 군 수

1. 사업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686-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나) 명칭 : 가북지구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에 따른 이설도로 공사

3.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 점	종 점		
교통 시설	가북지구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에 따른 이설도로 공사	가북면 박암리 686-4번지 일원	중로	3	40	1,257	12	27,075	가북면 몽석리 686-4	가북면 몽석리 1197-2	거창군 고시 2008-43호 (2008.09.17)	사업기간 변경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나)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5. 사업기간

○ 당초 : 2012.12.14~2016.12.31

○ 변경 : 2012.12.14~2017.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 붙임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건설과 및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군	면	리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권리명	주소	성명	
1	거창	가북	박암	690-3	도로	576	77	대구 달성군 월배면 송현동 23 비23	김상철				
2	거창	가북	박암	690-2	도로	3,467	888		거창군				
3	거창	가북	박암	686-4	전	235	22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4	거창	가북	박암	684-1	대	195	19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5	거창	가북	박암	683-3	대	220	22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6	거창	가북	박암	683-1	도로	9	9		거창군				
7	거창	가북	박암	1317	도로	4,671	196		국(건설부)				
8	거창	가북	박암	683	대	135	135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촌공사				
9	거창	가북	박암	산142-1	임야	67	67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촌공사				
10	거창	가북	박암	산143-1	임야	326	326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촌공사				
11	거창	가북	박암	682	대	430	430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촌공사				
12	거창	가북	박암	681	대	231	23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3	거창	가북	박암	680	대	436	33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4	거창	가북	박암	산144	임야	1,869	1,13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5	거창	가북	박암	산145-3	도로	24,314	8,98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6	거창	가북	박암	산145-5	도로	689	689		거창군				
17	거창	가북	박암	산145-7	임야	654	35	부산 동래구 사직동 시영 21-303호	박종한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04	박성기				
								부산 동래구 노포동 783	박종만				
								거창읍 하동 338-5	박금봉				
								가북면 박암리 619	박문규				
								거창읍 하동 350-1	박철홍				
								부산 북구 주례2동 82-2	박해상				
가북면 뽕석리 1669	박인기												
18	거창	가북	박암	산145-8	임야	2,745	2,66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9	거창	가북	박암	산148-3	도로	77	61		거창군				
20	거창	가북	박암	산148-4	도로	210	206		거창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군	면	리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권리명	주소	성명	
21	거창	가북	박암	산148-5	도로	238	211		거창군				
22	거창	가북	박암	산153-6	도로	296	289		거창군				
23	거창	가북	박암	산153-7	도로	816	37		거창군				
24	거창	가북	박암	산103-3	유지	35,088	76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5	거창	가북	몽석	1723-1	도로	109	83		거창군				
26	거창	가북	몽석	1723-2	도로	33	28		박능술				미등기
27	거창	가북	몽석	산79-3	도로	3,138	1,00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8	거창	가북	몽석	산79-2	도로	99	92	전북 남원군 남원면 천거리	천덕원				
29	거창	가북	몽석	산80-2	도로	496	496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김경호				
30	거창	가북	몽석	1944	도로	2,757	591		국도해양부				
31	거창	가북	몽석	1708-2	도로	53	24		김상기				미등기
32	거창	가북	몽석	산81-3	도로	397	372		김진기				미등기
33	거창	가북	몽석	1153	전	397	38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756	김진희				
34	거창	가북	몽석	1153-1	도로	23	23		거창군				
35	거창	가북	몽석	산81-13	임야	75	75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촌공사				
36	거창	가북	몽석	1154-1	전	198	48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566	김진효				지분 3분의1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234	김종현				지분 3분의1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530	김종희				지분 3분의1
37	거창	가북	몽석	1154-2	도로	172	172		거창군				
38	거창	가북	몽석	산81-9	도로	20	20		거창군				
39	거창	가북	몽석	산81-12	임야	268	268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촌공사				
40	거창	가북	몽석	산81-2	도로	198	177		김진기				
41	거창	가북	몽석	산81-5	도로	292	29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42	거창	가북	몽석	산81-8	도로	107	107		거창군				
43	거창	가북	몽석	산82-1	도로	153	153		거창군				
44	거창	가북	몽석	산82-3	임야	252	252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0	김동도				
45	거창	가북	몽석	1159-2	도로	1,956	1,956		거창군				
46	거창	가북	몽석	1159-3	전	77	22		경상남도				
47	거창	가북	몽석	1156-4	전	37	33		김보권				미등기
48	거창	가북	몽석	1158-3	도로	15	15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493	김영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군	면	리			지적	면입	주소	성명	권리명	주소	성명	
49	거창	가북	몽석	1158-4	전	157	157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90-2	김영수				
50	거창	가북	몽석	산82-2	임야	175	175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0	김동도				
51	거창	가북	몽석	1179-1	답	60	6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52	거창	가북	몽석	1179-3	대	22	22		경상남도				
53	거창	가북	몽석	1181-1	답	436	34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54	거창	가북	몽석	1180-1	임야	53	53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변희석				
55	거창	가북	몽석	1180-3	전	238	238		경상남도				
56	거창	가북	몽석	산92-2	도로	198	198		김대기				이등기
57	거창	가북	몽석	산92-3	도로	416	380		거창군				
58	거창	가북	몽석	산92-4	임야	120	120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촌공사				
59	거창	가북	몽석	1197-2	도로	755	577		거창군				
60	거창	가북	몽석	1925	하천	73,894	12		국(건설부)				

거창군 고시 제2017-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1월 23일

거 창 군 수

신 청 인	조 정 현	주 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13, 305호
하 천 명 (하천등급)	분계천(지방하천)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경남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1191번지	
	면 적	60m ²	
	점용기간	2017년 01월 23일부터 ~ 영구	
	목적 및 사유	단독주택 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1. 25.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16 외 4건(부여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3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16	2009-04-01	2017-01-25	성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이 반영된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3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3	2009-04-01	2017-01-25	성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이 반영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89-5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740-8	2009-12-28	2017-01-25	행정구역 고제면을 지나가는 도로라 하여 고제로라 명명	
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108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당산말길 111-252	2009-04-01	2017-01-25	당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379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길 28	2009-04-01	2017-01-25	행정구역명 상천을 이용하 여 상천길로 명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과수원조성(사과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		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산210	▶ 당초 : 61,210㎡	▶ 당초 : 4,210㎡	▶ 당초 : 6,200천원	▶ 당초 : 2015.12.17. ~ 2016.12.31.	경남 거창군 북상면 샘골길 38	신중철
	▶ 변경 : 60,554㎡	▶ 변경 : 4,223㎡	▶ 변경 : 7,600천원	▶ 변경 : 2015.12.17. ~ 2017.04.30.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7년 1월 25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제2017-91호

거창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합산 향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 01. 19.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명칭	위치	사업규모(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결정 면적	금회시행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유통 업무 설비	거합산 향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 지 일원	94,567	3,210	1,237	1,237	거고 제2008-43호 (2008.9.17.)	선별포장 및 부속시설

2. 사업 시행자

가)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나) 성명 : 거창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3.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4.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리	지번					
1	거창읍 대평리	543-10	구	64	45	거창군	
2	거창읍 대평리	1329-3	도	80	54	거창군	
3	거창읍 대평리	1344-2	답	167	167	거창군	
4	거창읍 대평리	1345	답	1,076	236	거창군	
5	거창읍 대평리	1347	창	35,027	1,145	거창군	
6	거창읍 대평리	1347-9	답	793	480	거창군	
7	거창읍 대평리	1347-11	답	1,098	1,083	거창군	
합계				38,305	3,210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열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또는 전화(055-940-3583), FAX(055-940-35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비 지원 공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조성을 위한 “주택지원사업” 보급 보조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주택지원사업 지방비 지원사항」을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거창군수



1. 사업명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사업량 : 100가구 (태양광 80, 태양열 15, 지열 5)
3. 에너지원별 지방비 지원내역
 - 지원내역

(단위 : 1세대, 천원)

에너지원	지원 구분		지방비 지원단가	비고			
태양광 (고정식)	단독주택	2.0kW 이하	650kWh 초과	480			
			600kWh초과~650kWh이하	510			
			550kWh초과~600kWh이하	530			
			500kWh초과~550kWh이하	560			
			450kWh초과~500kWh이하	590			
			450kWh이하	620			
			2.0kW초과~3.0kW이하	650kWh 초과		480	
		600kWh초과~650kWh이하		510			
		550kWh초과~600kWh이하		530			
		500kWh초과~550kWh이하		560			
		450kWh초과~500kWh이하		590			
		450kWh이하		620			
		태		평판형		7.0㎡이하	10.0MJ/m ² ·day초과

에너지 지원	지원 구분		지방비 지원단가	비고			
양열	진공관형	7.0㎡초과~ 14.0㎡이하	7.5MJ/m ² ·day초과~ 10.0MJ/m ² ·day이하	100			
			7.5MJ/m ² ·day이하	100			
		14.0㎡초과~ 20㎡이하	10.0MJ/m ² ·day초과	100			
			7.5MJ/m ² ·day초과~ 10.0MJ/m ² ·day이하	100			
			7.5MJ/m ² ·day이하	100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229	
				10.5kW초과~17.5kW이하		229	

○ 지방비 지원 한도액

구분	형식	최대지원용량	지방비 지원한도액(천원)	비고
태양광	고정식	3kW이하/호(가구)	1,860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20㎡이하/호(가구)	2,000	
지열	수직 밀폐형	17.5kW이하/호(가구)	4,000	

- 주)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 조정하여 결정(자부담액= 총공사액-보조액)
 2. 에너지원별 최대용량미만은 지방비 지원단가를 적용하고, 최대용량은 지방비 지원상한액 지원
 3.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 BIPV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기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내용을 적용함

4.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5. 지원대상 : 건물등기부상의 용도 및 한전과 계약종별이 「단독주택」 건물의 소유자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주택지원사업 사업 승인을 받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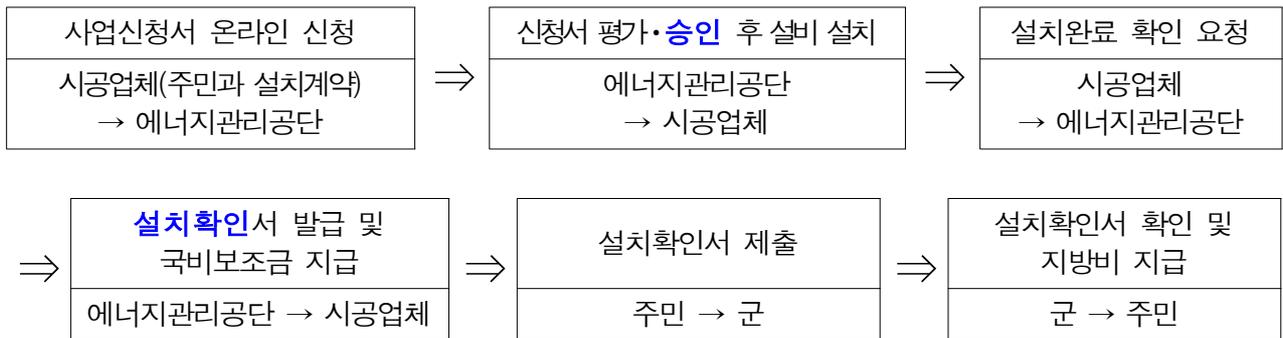
6. 공고기간 : 2017. 01. ~ 2017. 11.

7.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 1. ~ 2017. 11.
- 신청접수 : 주택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거창군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으로 제출

※ 지원신청시 에너지관리공단에 발급받은 승인서 사본 첨부

※ 보조금 교부신청시 에관공에 발급받은 설치확인서 사본 첨부



8. 기타사항

- 에너지관리공단 접수 순으로 지원하되, 승인이 100가구를 초과 할 경우

- 1) 에너지관리공단 접수순서에 따라 향후 추가예산 확보 후 지급
- 2) 예산 범위내 에너지원별 가구수 조정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 (☎055-940-37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거창군 주택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2. 거창군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3. 신재생에너지 이용안내

신재생에너지 이용안내

□ 태양광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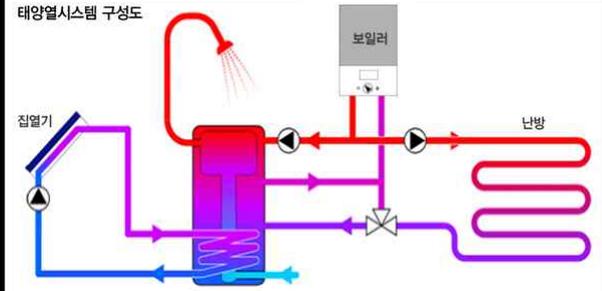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창호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
 ⇒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

□ 태양열 주택

태양열 설비인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를 우선 사용하며 보조적으로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
 ⇒ 지원규모는 20㎡ 이하.
 ※ 주택용 태양열 설비는 급탕위주의 설비

□ 지열 주택

지열에너지는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 지표면 가까운 땅속의 온도는 개략 10℃~20℃ 정도 유지해 열펌프를 이용하는 냉난방시스템에 이용

<p>태양광주택 구성도</p>  <p>발전율 시작하면 눈금이 반대방향으로 회전한다</p> <p>태양광주택 구성도</p> <p>발전율 시작하면 눈금이 반대방향으로 회전한다</p> <p>상계용 전력당개</p> <p>열매전력은 일몰 소비전력에서 차감</p> <p>무축전력은 한국전력으로부터 구입</p> <p>월 사용량이 400kWh인 주택의 경우</p> <table border="1"> <tr> <td>설치전 약 7만5백원</td> <td>설치후 약 6천6백원</td> <td>약 6만 4천원 절감!</td> </tr> </table> <p>월 사용량이 600kWh인 주택의 경우 (3kW, 월 300kWh 발전 가정)</p> <table border="1"> <tr> <td>설치전 약 19만5천원</td> <td>설치후 약 4만원</td> <td>약 15만원 절감!</td> </tr> </table>	설치전 약 7만5백원	설치후 약 6천6백원	약 6만 4천원 절감!	설치전 약 19만5천원	설치후 약 4만원	약 15만원 절감!	<p>태양열시스템 구성도</p>  <p>태양열시스템 구성도</p> <p>집열기</p> <p>보일러</p> <p>난방</p> <p>연료가 도시가스인 주택의 경우</p> <p>연간 절감액 1백11만8천원</p> <p>연료가 보일러 등유인 주택의 경우</p> <p>연간 절감액 1백79만2천원</p> <p>※ 절감액은 발전량, 효율, 연료가격 등의 조건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설치전 약 7만5백원	설치후 약 6천6백원	약 6만 4천원 절감!					
설치전 약 19만5천원	설치후 약 4만원	약 15만원 절감!					



공 고(안)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45호(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에 의거 2018년 시행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거창군수

- 신청기간 : 2017. 1. 23. ~ 2017. 2. 21일까지
- 신청대상자 :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총괄), 사업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등
- 지원조건·자격·방법 등 :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및 제출 기관 문의

※ 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도 확인 가능

□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농업인 등 신청 ⇒ 신청서 검토(시·군) ⇒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 ⇒ 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농림수 산식품부 심의 ⇒ 기획재정부 심의 ⇒ 국회 확정

- 안내기관 : 농업기술센터, 군청(사업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농협거창군 지부, 지역농협, 산림조합, 한국농촌공사거창함양지사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거창출장소

※ 기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총괄부서), 읍·면사무소, 또는 안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 940-8123】

◎ 대상사업

<식량분야(10)>

- 생산기반확충(6) : 농지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육자)사업, 농기계임대사업
- 생산 및 유통개선(4) : 들녘경영체육성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쌀가공산업육성사업,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원예·식품분야(17)>

- 생산기반확충(13) :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식품·외식종합자금,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보완사업
- 과수·시설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4) : 원예시설현대화사업,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농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첨단온실지원사업

<임업 및 산촌분야(8)>

- 생산 및 유통개선(7) :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산림소득증대지원사업, 목재이용 및 사업육성사업,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임산물수출지원사업, 귀산촌인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산림자원조성(1) : 조림·숲가꾸기사업

<농촌개발분야(24)>

- 생산 및 유통개선(3)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기술개발(2)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신기술보급사업
- 인력육성(3)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소득보전(7)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5) :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사업(저탄소농축산

물인증제)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사업(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 농촌복지(4)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사업

<축산분야(9)>

- 사육기반확충(5)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송아지생산안정,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사업
- 생산 및 유통개선(4)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산자조금지원사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지특회계분야(3)>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1월 2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규정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원대상 확대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내용

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관내 입주기업 지원대상 확대(안 제10조)

- (현행) 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 (변경) 국내 기업투자촉진지구 외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나.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규정 신설(안 제27조)

②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규정 신설(안 제23조)

○ 자격, 기능, 수당범위를 정함

나. 성별 구분항목 신설(별지 제1호서식 ~ 제7호서식, 제9호·제10호서식)

4. 개정조례안 : 붙임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5. 입법예고 기간 : 2017. 01. 23. ~ 2017. 02. 13.(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 거창군청 기업지원과 **☎ 055-940-3378, fax 940-3679**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업지원과 투자유치담당 **☎ 940-337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일자	2017. 01. .
제 출 자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규정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원대상 확대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관내 입주기업 지원대상 확대(안 제10조)

○(현행) 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변경) 국내 기업투자촉진지구 외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나.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규정 신설(안 제27조)

②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규정 신설(안 제23조)

○ 자격, 기능, 수당범위를 정함

나. 성별 구분항목 신설(별지 제1호서식 ~ 제7호서식, 제9호·제10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지방자치법」 제9조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나. 예산 조치:

다. 합 의: 규제개혁담당, 여성아동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01. 23. ~ 2. 13.(20일간)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분석의뢰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 (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국내 기업투자촉진지구 외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거창군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거창군 투자유치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제28조를 제28조·제29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0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국내 기업투자촉진지구 외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제7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u>제10조(투자촉진지구 외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u>----- ----- -----</p> <p><u>제27조(투자유치자문관)①</u>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자문가를 거창군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u>②</u>거창군 투자유치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 지원대상 확대 : 기존 개별입주 기업 외에 산업단지도 포함</p> <p>○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운영 근거 마련</p>
제27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생략	<u>제28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u> 현행 제27조와 같음	
제28조(시행규칙) 생략	<u>제29조(시행규칙)</u> 현행 제28조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 6. (생략)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제33조(투자유치자문관)** ①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국내 기업투자촉진지구 외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투자유치자문관) ①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투자유치자문관 (이하“자문관”이라 한다)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대학교수
 3.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 ③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3. 그 밖에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중 “남, 녀”란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3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조례10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 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투자촉진지구 외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p>	<p>○조례 제 10조 개정 사항 반영</p>
<p><신 설></p>	<p>제23조(투자유치자문관)①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대학교수 3.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의 임원 <p>②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p> <p>③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3. 그밖에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 	<p>○ 자 문 관 자격, 기능, 수당 범위를 규정함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24조</p>

【별지 제5호서식】

공장 □ 시설 보조금 신청서 □ 이전				
신 청 인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소재지 (대표자 주소)			전화 F A X
입주유형		□창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신설(증설)
공장소재지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신규채용 상시근로자(명)		주요생산품		()
공장시설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신규취득공장시설	기존공장이전시설		
	취득금액	취득금액 ①	감가상각누계액 ②	공장시설가액 ①-②
합계				
건축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보조금신청금액		백만원 (도비: 시군비:)		
보조사업 담보방법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신청일 현재 6월이내의 결산 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3. 신규채용 상시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조례시행규칙 제2조제9호 관련) 4.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기타 증빙자료.		1. 공장등록증 1부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전화		
			F A X		
기존 소재지					
공장 이전지					
공장설립(준공일)				업종(분류번호)	()
공장증설 투자내역	과 목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	비고	
	합 계				
	토지 매입비				
	건축비				
	시설 설치비	기계장치 부속설비			
보조금 신청	건축공사 착수		백만원		
	공장등록(완료)			총 지원금액	백만원
				기 지원금액	백만원
				금회 신청 금액	백만원
<p>「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증설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1부 3. 건축비, 시설설치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건축 공정을 확인서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1.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공장등록증 1부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	신고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USD)	상당), 퍼센트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예정일	
설립(이전)일자	년 월 일	공장등록일자	년 월 일	
소재지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교육훈련 대상인원		교육훈련 제외인원	
	(남 여)	(남 여)	(남 여)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지급액	
보조금신청액	만원(USD) 상당)			
<p>「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p> <p>거창군수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1.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			없음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조금 신청업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관계법령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4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대학교수
3.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3. 그 밖에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가.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가. 적립금의 재원(안 제2조)

- 일반회계 출연금(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3년 평균증가율 초과분),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나. 적립금의 조성(안 제3조)

-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1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
-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
-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
-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

다. 적립금의 사용(안 제4조)

- 사용요건 : 세입감소, 긴급한 필요
 - 1회계연도 사용할 수 있는 한도(적립총액의 1/2)

- 사용용도
 - 급격한 세입감소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
 -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 긴급한 대규모 사업비 등

라. 위원회 설치 (안 제6조)

- 거창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적립금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마. 적립금의 존속기한(안 제8조) : 2021년 12월 31일까지(5년)

4.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거창군 기획감사실

(50132)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전화 : 055-940-3052, FAX : 055-940-30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기획감사실 (전화 : 055-940-3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립금의 재원) 군수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적립금의 조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1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4.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적립금의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채무부담 사업비
5. 기타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제5조(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 군수는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적립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거창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에 따른 거창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적립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립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적립금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적립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적립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적립금운용관 : 재정안정화적립금 담당부서장
2. 적립금출납원 : 재정안정화적립금 담당

② 적립금운용관과 적립금출납원은 적립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적립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적립금의 존속기한)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거창군 문화예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 및 전문화를 위해 설립되는 거창문화재단에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일

(재)거창문화재단 이사장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모집분야	채용직위(직급)	채용인원	비 고
	상임감독(전문직 가급)	1명	비상근
문화사업1단	단장(전문직 다급)	1명	상근
문화사업1단	단원(전문직 라급)	1명	상근
문화사업1단	단원(전문직 마급)	1명	상근
문화사업2단	단장(전문직 다급)	1명	상근
문화사업2단	단원(전문직 라급)	1명	상근

※ 업무내용

직 위	인원수	업 무 내 용	비고
상 임 감 독	1	○ 문화재단 운영 총괄 ※ 비상근(주1회 이상 근무)	
문 화 사 업 1 단 장	1	○ 거창한마당대축제 기획 총괄 ○ 공연·전시분야 콘텐츠 개발 등	
문 화 사 업 1 단 원	2	○ 거창한마당대축제 운영 ○ 공연·전시분야 콘텐츠 개발·운영 ○ 문화사업 관련 공모사업 추진 등	
문 화 사 업 2 단 장	1	○ 거창국제연극제 기획 총괄 ○ 연극분야 콘텐츠 개발 등	
문 화 사 업 2 단 원	1	○ 거창국제연극제 운영 ○ 연극분야 콘텐츠 개발·운영 등	

2. 응시자격

○ 직위별 채용자격 기준

직위 (직급)	자 격 기 준	비고
상임감독 (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직무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문화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문화예술, 문화 행정, 경영분야에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최근 5년간 문화정책 관련 본인 연구논문 3편 이상 또는 본인 참여 연구 논문 2편 이상인 자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회경력(문화, 예술, 학술, 언론, 경영 등), 자격, 학력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장 (다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문화예술, 문화 행정, 경영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최근 5년간 문화정책 관련 본인 연구논문 1편 이상 또는 본인 참여 연구 논문 2편 이상인 자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회경력(문화, 예술, 학술, 언론, 경영 등), 자격, 학력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원 (라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문화예술, 문화 행정, 경영분야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호에 준하는 사회경력(문화, 예술, 언론, 경영 등), 자격, 학력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원 (마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문화예술, 문화 행정, 경영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호에 준하는 사회경력(문화, 예술, 언론, 경영 등), 자격, 학력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연 령

채용직위(직급)	연 령	비 고
상임감독(전문직 가급)	만25세 이상	공고일 현재
단장(전문직 다급)	만25세 이상	공고일 현재
단원(전문직 라급)	만25세 이상 ~ 만57세 미만	공고일 현재
단원(전문직 마급)	만25세 이상 ~ 만57세 미만	공고일 현재

○ 성 별 : 남·여 구분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거주지역 : 제한없음(토·일요일, 공휴일 근무 가능한 사람)

- 응시자격 기준 외 자격증 소지자 우대(자동차운전면허증 2종보통 이상,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전산 관련 자격증,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등)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타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타 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타 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2. 재단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근로기간 및 조건

- 근로기간 : 1년
- 임용절차 : 수습임용(3개월) ⇒ 정규임용(수습기간 포함 1년)
 - ※ 수습기간중 업무수행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거나 계속 근로함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 가능

○ 급여조건(연봉제 - 경력기준)

(단위 : 천원)

채용직위(직급)	연 봉	비 고
상임감독(가급)	25,000 ~ 35,000	【후생복리】 4대보험 가입,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책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단 장(다급)	35,000 ~ 50,000	
단 원(라급)	20,000 ~ 40,000	
단 원(마급)	15,000 ~ 30,000	

4. 공고기간 : 2017. 1. 23.(월) ~ 2017. 2. 7.(화) / 15일간

5.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17. 2. 1.(수) ~ 2017. 2. 7.(화) / 7일간
 - ※ 접수시간 :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 접 수 처 : 거창문화센터 3층 사무실
 - ※ 주소 : (50147)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 거창문화센터 3층 사무실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불가)
 - ※ 등기우편 접수 : 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가. 지원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 나. 응시원서 1부(자필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cm×4.5cm 사진 2매 부착
 -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사. 주민등록표등·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자.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차.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서류 제출시 응시원서 접수 마감 시각까지 제출
- ※ 지원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원서 등 별지 서식은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일정 및 방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개별통지) : 2017. 2. 14.(화)
 - 가. 각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2~3배수 범위내 선발 예정
 - 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근무경력 등 검정
- 2차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2017. 2. 17.(금) 예정
 - ※ 상임감독의 경우 프리젠테이션 발표 포함(15분 이내의 발표자료 10부를 지참하여 시험 2시간 전까지 제출 / 거창문화재단 및 거창국제연극제, 거창한마당대축제 발전 방안 등)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2. 21.(화) 예정 / 개별통보 및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 공고
 -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시간과 장소는 개별 통보 예정이며, 전체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시험시행일을 다시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함.

7. 응시자 주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합격자 발표일 등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문화센터(☎ 055-940-8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지원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

제출서류 목록

목 록	제출여부
가. 지원자 제출서류 목록표	
나. 응시원서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라. 직무수행계획서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 주민등록표등·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아. 경력증명서류	
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란에 “○”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재)거창문화재단 직원 채용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재)거창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소			(주택전화 :)	(휴대전화 :)
최 종 출신학교	학교(년도) 졸업 대학교(과 년) 졸업(전공분야 :) 대학교 대학원(과 년) 졸업·수료			
주요경력	근 무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관 련 자 격 증				
응시직급	성 명	(한글)		
응시분야		(한자)		
※응시번호	주민등록 번 호			

응시직급	응시원서(부분) (재)거창문화재단 직원 채용 임용시험		사 진(1) 반명함판 (3.5cm×4.5cm)
응시분야	성 명	(한글) (한자)	
※응시번호	생년월일		

응시직급	응 시 표 (재)거창문화재단 직원 채용 임용시험		사 진(2) 반명함판 (3.5cm×4.5cm)
응시분야	성 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2017년 월 일 (재)거창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철입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시험 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유 의 사 항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작 성 요 령 》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응시직급 : 상임감독(전문직 가급), 단장(전문직 다급), 단원(전문직 라급), 단원(전문직 마급) 기재
- ② 응시분야 : 문화사업1단 또는 문화사업2단 기재(상임감독 제외)
- ③ 주 소 :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우편을 수령할 수 있는 곳)을 기재
- ④ 학 력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과 그 연월일 및 전공분야를 기재하고 수학구분 중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⑤ 경 력 : 응시자격과 관련되는 경력 기재
- ⑥ 자 격 증 : 응시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증 기재
- ⑦ 성 명 : 정자로 기재함
- ⑧ 사 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탈모 사진(3.5cm×4.5cm)으로 상반신 칼라사진(동일 원판의 것)을 풀로 붙이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세)
	한자		이메일	
현 주 소				
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 락 처	자택		사무실	이동전화

직무관련 정보

구 분	내 용
응시분야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분야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기재함

학 력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명

주요경력

기간	소 속	직 책	담당업무 등 기타

※ 재직기간, 직장명, 직위, 업무내용 등은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경력증명서에 업무내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작성함

석사학위 논문

○ 학위수여일자 :
○ 논문제목 :
○ 내용요지

박사학위 논문

○ 학위수여일자 :
○ 논문제목 :
○ 내용요지

※ 내용요지는 10줄 이내로 간략히 작성함

그밖의 논문, 저술 등 연구개발 실적

제 목	게재서 (출판사)	연구자	연 구 연월일	내용요지

수상경력

수상일자	내용(훈격)	수여기관	수상경위

기술 및 자격증

구 분	종 류	취득일(시행일)	시행기관	비 고
자격증				
어학능력검증				점수
기 타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자기소개서

- 응시분야 : 문화사업1단장 또는 문화사업1단원
- 성명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2017. . . .

작성자 (서명·인)

※ 작성요령

1.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적 등을 위주로 작성
2. 분량은 A4용지 5매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글자 크기14)를 사용하여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 응시분야 : 문화사업1단장 또는 문화사업1단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2017. . .

작성자 (서명·인)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은 (재)거창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직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재)거창문화재단이 실시하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통신 이용,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확인서 및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7년 월 일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재)거창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금연구역의 표시와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일부내용을 개정하고 과태료 규제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표시 규정 삭제함(안 제6조)

- 금연구역의 표시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령(별표 2)에 규정되어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
- 조례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규정 삭제

나. 흡연구역 등의 설치규정 삭제함(안 제7조)

-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별표 2) 규정에 있고 조례로 위임한 바 없으며, 소유자 등에게 흡연실 설치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위임 없이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함.

-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 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문제 해소(흡연구역 ⇒ 흡연실) 위해 삭제
-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법령위반 규정 삭제

다. 과태료 규정 정비함(안 제10조)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위반 소지를 없앴
-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라목2)
- 위임내용: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만
1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4. 입법예고기간 : 2017. 1. 24. ~ 2017. 2. 13.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보건소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우편번호 50142]에게 서면이나 메일 (rimi041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8324** 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일자	2017. 1. .
제 출 자	보건소장

1. 제안 이유

「국민건강증진법」금연구역의 표시와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일부내용을 개정하고 과태료 규제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표시 규정 삭제함(안 제6조)

- 금연구역의 표시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령(별표 2)에 규정되어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
- 조례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규정 삭제

나. 흡연구역 등의 설치규정 삭제함(안 제7조)

-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별표 2) 규정에 있고 조례로 위임한 바 없으며, 소유자 등에게 흡연실 설치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위임 없이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함.
-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 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문제 해소(흡연구역 ⇒ 흡연실) 위해 삭제
-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법령위반 규정 삭제

다. 과태료 규정 정비함(안 제10조)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위반 소지를 없앴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라목2)
-위임내용: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만
1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항,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5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심사의뢰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1. ~ 2017. 2.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분석의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금연구역의 표시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부령에 금연구역의 표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반복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또한 금연구역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례의 조항도,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금연구역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재 위임하는 규정이어서 위법함</p>
<p>제7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p>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흡연 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p>	<p><삭 제></p>	<p>○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서는 이미 금연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에 그 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흡연실의 설치에 관한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상위법령에서 흡연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규칙으로 해당 사항을 정</p>

<p>하여야 한다.</p> <p>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시설을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제10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p>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삭제</p> <p>○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에 규정되어 있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한 경우만 해당하므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규정함</p> <p>○제2항 규정이 없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되기 때문에 삭제함.</p>
---	---	---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6.12.23.] [법률 제13363호, 2015.6.22., 일부개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 ⑥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 ⑦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2016.3.2.>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2.1.19., 2011.6.7.>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2011.6.7.>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6.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 2016.3.2.>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6.12.23.] [대통령령 제27238호, 2016.6.21., 일부개정]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전문개정 2011.12.6.]

[별표 5] <개정 2012.1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 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호	75	150	30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9.3.] [보건복지부령 제438호, 2016.9.2., 일부개정]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②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7.]

[별표 2] <개정 2012.12.7> [시행일:2015.1.1]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에만 해당한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3항 관련)

1.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가. 표지 부착

-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표지 내용

-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금 연 건 물 </div>	<건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금 연 시 설 </div>	<시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금 연 </div>	<그 밖의 경우>

나)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 1)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흡연실

(예시)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금연구역의 표시와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일부내용을 개정하고 과태료 규제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삭제함(안 제3조, 별표)

- 조례로 위임받지도 않은 사항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법령위반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함
- 금연구역 표지판 기준이나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별표 2)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삭제

4. 입법예고기간 : 2017. 1. 24. ~ 2017. 2. 13.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보건소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우편번호 50142]에게 서면이나 메일 (rimi041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832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일자	2017. 1. .
제 출 자	보건소장

1. 제안 이유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법령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그 사항을 다시 규칙으로 재 위임하고 있어 그 위법성을 바로잡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삭제함
(안 제3조, 별표)

- 조례로 위임받지도 않은 사항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법령위반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함
- 금연구역 표지판 기준이나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별 표 2)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제7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 1. 24. ~ 2017. 2. 13. (20일간)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분석의뢰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3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p>	<p><삭 제></p>	<p>위임근거인 조례 제6조,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삭제</p>

<삭 제>

【별표】

안내표지판의 기준(제3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2. 안내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 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안내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안내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가. 도시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1)

<p>도시공원 600x4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60cm x 40cm □ 전용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 탕(M/3 Y/12) 테두리(M/50 Y/50) 금연구역(C/30 M/70 Y/90 K/40) 학교주변(K/60) □ 전용서체: 국문타이틀(J아침햇살M-TT) K/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문(윤고딕130) 영문(윤고딕130) □ 재 질: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	---

가-1.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600mm x 170mm □ 지주에 표지판 전후 양면 부착구조 표 지 판 : 표기사항 원목 샌트블라트 가공 판테두리 : 오일스테인 처리 지도부분 : 투명 아크릴 배연인쇄, 볼트고정 지 목 : 목재에 오일스테인처리
--	--

<내용예시>

- ◆ 도시공원 금연구역입니다.
- ◆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35cm x 9.5cm □ 전용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 탕(Y/100) 픽토그램(C/60 M/30) 금지구역(C/70 Y/20) □ 전용서체: 국문타이틀(J아침햇살M-TT) K/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문(윤고딕130) 영문(윤고딕130) □ 재 질: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	--

<내용예시>

- ◆ 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 ◆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 35cm x 9.5cm □ 전용색상 : 바 탕(C/70 Y/75) □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J아침햇살M-TT) K/60, 본문(윤고딕130), 영문(윤고딕130) □ 재 질 :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부착
---	--

라. 학교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

<p>학교주변 600x4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 60cm x 40cm □ 전용색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 탕(M/3 Y/12) 테두리(M/50 Y/50) 금연구역(C/30 M/70 Y/90 K/40) 학교주변(K/60) □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J아침햇살M-TT) K/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문(윤고딕130) 영문(윤고딕130) □ 재 질 :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	--

<내용 예시>

- ◆ 학교 출입문으로 부터 50m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 ◆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그 밖에 금연구역 바닥재 안내표지판(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 : 45cm x 45cm(바탕 청색) / 42cm x 42cm(바탕 노랑) (서체 ; HY헤드라인M / Adobe 고딕 Std 출입구~거창군)
---	---

관련법령

□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 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시설을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